



# 당첨자 자격검증(서류접수) 안내

-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당첨자 본인 1인만 방문접수가 가능하며,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1인만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.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에 의거하여 공급계약 체결 전 당첨자에 대한 자격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.
- 자격 확인과정에서 부적격자로 의심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소명을 완료한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.
- 부적격 당첨자로 확정되신 분들은 소명기간 내에 당첨자 삭제 및 계좌 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- 원활한 서류 접수를 위해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오니, 이 점 양지하시어 예약접수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예약일자 및 시간 외 방문이 불가하며, 서류접수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주차장 안내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76-53 서연주차타워

## ● 당첨자 자격검증 및 계약 체결 일정 안내

구분	당첨자 자격검증(서류접수)		당첨자 계약 체결
일정	22.07.07(목)~07.10(일) 4일간	22.07.11(월)~07.12(화) 2일간	22.07.16(토)~07.19(화) 4일간
대상	특별공급, 일반공급 당첨자	예비당첨자(특별공급, 일반공급)	당첨자 중 자격 검증 완료자
방법	방문접수(홈페이지 사전예약제 운영)		
사전예약기간	22.07.01(금) ~ 07.07(목), 7일간		22.07.13(수) ~ 07.15(금), 3일간
장소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1로 39, 지축프라자 704호		

- 유의사항**
- 당첨자별 자격 확인 서류는 「당첨자 서류접수 안내문」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  - 모든 증빙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2.06.13) 이후 발급분만 해당됩니다.
  - 모든 서류는 '상세 표기'로 발급하여 제출바랍니다.(과거 전입사항, 세대주와의 관계, 주소변동 내역,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등)
  - 당첨자 자격 확인 시 안내 서류 외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- 코로나19 관련 및 지침 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, 접수방법 등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  - 코로나19 감염 증상(발열 37.5도 이상, 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, 마스크를 미착용 하신 분 등은 방문이 불가합니다.
  - 방문 예약제는 청약 당시 입력한 당첨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'e편한세상 지축 센터가든'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, 대리인(배우자 포함)은 당첨자 인적 사항으로 예약 후 방문 가능합니다.
  - ※ 예약 방법 및 예약 시 유의사항 관련 자세한 내용은 e편한세상 지축 센터가든 홈페이지(www.elife.co.kr) 사전방문예약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- 당첨자 자격 확인을 위해 제출하신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습니다.

**문의사항** 02-381-0331(문의전화가 많아 통화 연결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)

## ● 예비당첨자 자격 확인 안내

※ 잔여세대 공급수량 고려 및 원활한 서류접수 진행을 위하여 전체 예비당첨자 중 아래에 해당되는 순번의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우선 사전서류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후 잔여세대 발생 시 차순위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.

예비당첨자 자격검증 대상자	
특별공급	일반공급
84A 타입 : 예비순번 1~33번 84B 타입 : 예비순번 1~15번 84C 타입 : 예비순번 1~31번	84A 타입 : 예비순번 1~19번 84B 타입 : 예비순번 1~9번 84C 타입 : 예비순번 1~18번

## ● 서류접수처 및 주차장 약도



※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● 현장약도





# 기관추천 특별공급

※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6.13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
※ 사업주체는 아래 구비서류 외에도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해당서류	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 사항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-	• 접수 장소에 비치
	서약서	-	• 접수 장소에 비치
	신분증 사본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(계약)용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
	인감도장	본인	• 인감증명서 상의 인장 대조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
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, 과거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등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추가 사항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• 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
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단독세대일 경우(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, 배우자가 사망, 이혼한 경우) 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를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대리인	위임장	-	• 접수장소 비치(당첨자 인감도장 날인)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[용도 : 위임용]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
	대리인 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대리인 인장	대리인	• 서명 가능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(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 포함)



# 다자녀가구 특별공급

※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6.13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
※ 사업주체는 아래 구비서류 외에도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해당서류	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
필수 사항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-	• 접수 장소에 비치	
	서약서	-	• 접수 장소에 비치	
	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	-	• 접수 장소에 비치	
	신분증 사본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	
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(계약)용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	
	인감도장	본인	• 인감증명서 상의 인장 대조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	
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	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, 과거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	
추가 사항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※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(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) ※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(기록대조일 : 본인 생년월일 ~ 개명 이전일로 설정)	
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• 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	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단독세대일 경우(주민등록표 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, 배우자가 사망, 이혼한 경우) • 만19세 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	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 진단서) 제출 ※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	
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-	• 접수장소 비치	
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자녀가 입양인 경우	
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	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 또는 자녀	•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(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(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) •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-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	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•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대리인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직계존속	•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,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 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	생업종사 단신부임	해외체류 증빙서류	본인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국내기업 ·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: 재직증명서 및 파견, 출장명령서 등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, 근로 관련 서류, 취업,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
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세대원	•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(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)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※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(기록대조일 : 본인 생년월일 ~ 개명 이전일로 설정) ※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 장기간 해외체류 이력이 확인될 경우, 체류 국가 확인을 위하여 여권 제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	복무확인서	본인	•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(수도권)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(군 복무기간 명시) •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	
위임장	-	• 접수장소 비치(당첨자 인감도장 날인)		
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[용도 : 위임용]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		
대리인 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		
대리인 인장	대리인	• 서명 가능		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(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 포함)



# 신혼부부 특별공급 (1/2)

※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6.13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  
 ※ 사업주체는 아래 구비서류 외에도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대상서류	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
필수 사항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-	· 접수 장소에 비치	
	서약서	-	· 접수 장소에 비치	
	신분증 사본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	
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·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(계약)용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	
	인감도장	본인	· 인감증명서 상의 인장 대조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	
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	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, 과거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	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·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※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(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) ※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(기록대조일 : 본인 생년월일 ~ 개명 이전일로 설정)	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혼인신고일 확인(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	
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·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- 발급처:국민건강보험공단	
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 전원의 소득입증서류		
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비여부	-	· 접수 장소에 비치		
추가 사항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배우자	·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· 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	
	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 진단서) 제출 ※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자 확인이 가능해야 함	
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-	· 접수장소 비치	
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자녀가 입양인 경우	
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 또는 자녀	·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(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·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를 출산한 경우 · 현재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-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	
	부동산 소유현황	본인 및 세대원 전원	·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"부동산 소유 현황"(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를 접수 장소에서 직접 증명해야 함) · 발급 시 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	
	생업중사 단신부임	해외체류 증빙서류	본인	·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중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국내기업·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: 재직증명서 및 파견, 출장명령서 등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, 근로 관련 서류, 취업,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
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세대원	·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(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)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※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(기록대조일 : 본인 생년월일 ~ 개명 이전일로 설정) ※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 장기간 해외체류 이력이 확인될 경우, 체류 국가 확인을 위하여 여권 제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	복부확인서	본인	·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(수도권)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(군 복무기간 명시) ·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	
	비사업자 확인각서	대리인	·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(접수장소 비치)	
대리인	위임장	-	· 접수장소 비치(당첨자 인감도장 날인)	
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	·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[용도 : 위임용]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	
	대리인 신분증	대리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	
	대리인 인장	대리인	· 서명 가능	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(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 포함)



# 신혼부부 특별공급 (2/2)

※ e편한세상 지축 센터가든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.06.13으로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기준, 사업소득의 경우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.  
 ※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6.13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  
 ※ 사업주체는 아래 구비서류 외에도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## 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(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)으로 발급)	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/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	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/세무서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※ 근무처별 소득명세서상 "주(현)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/세무서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① 재직증명서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	①, ② 해당 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, 간이과세자, 면세사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	①, ②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① 사업자등록증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분)	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
	신규사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,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	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	① 세무서 ② 등기소
	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	① 해당 직장/세무서 ② 해당 직장
국민기초생활수급자	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※ 근로계약서, 월별급여명세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	① 해당 직장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각서(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① 분양사무실 비치	

※ 해당직장,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 
 ※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 또한 성명,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 
 ※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(예시:출산휴가, 육아휴직 등)을 명시하여야 하며,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
# 생애최초 특별공급 (1/2)

※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6.13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  
 ※ 사업주체는 아래 구비서류 외에도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대상서류	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
필수 사항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-	· 접수 장소에 비치	
	서약서	-	· 접수 장소에 비치	
	신분증 사본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	
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·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(계약)용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차 대리신청은 불가	
	인감도장	본인	· 인감증명서 상의 인장 대조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	
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	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, 과거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	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· "주택공급에 관한 규칙"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※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(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) ※ 개명된 자의 경우 개명 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(기록대조일 : 본인 생년월일 ~ 개명 이전일로 설정)	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혼인 여부 및 혼인신고일 확인(※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수 제출) ·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소득세 납부 입증서류	본인	·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※ '5년 이상 소득세 납부'는 개월수(60개월)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,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		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·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- 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※ 단,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(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이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분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		
소득증빙서류		·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(부리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※ 단,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(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이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분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		
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비여부	-	· 접수 장소에 비치		
추가 사항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배우자	·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· 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	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직계존속	·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, 소득산정 시 청약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'전체 포함'으로 발급)	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· 현재 배우자의 세대원이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된 경우 제출 (단, 배우자의 전혼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 · 상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	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자녀	·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에 등재된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'미혼인 자녀'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·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	부동산 소유현황	본인 및 세대원 전원	·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·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'부동산 소유 현황'(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를 접수 장소에서 직접 증명해야 함) · 발급 시 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	
	임신진단서 또는 출산 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소득 산정시 태아를 가구원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(임신진단서) 제출 ※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	
	생업종사 단신부임	해외체류 증명서류	본인	· "주택공급에 관한 규칙"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국내기업·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: 재직증명서 및 파견, 출장명령서 등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, 근로 관련 서류, 취업,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증명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
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세대원	·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(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)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※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개명된 자의 경우 개명 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(기록대조일 : 본인 생년월일 ~ 개명 이전일로 설정) ※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 장기간 해외체류 이력이 확인될 경우, 체류 국가 확인을 위하여 여권 제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	복무확인서	본인	·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(수도권)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(군 복무기간 명시) ·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	
	비사업자 확인각서	-	·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(접수장소 비치)	
위임장	-	· 접수장소 비치(당첨자 인감도장 날인)		
대리인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	·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(용도 : 위임용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차 대리신청 불가	
	대리인 신분증	대리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	
	대리인 인장	대리인	· 서명 가능	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(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 포함)





# 생애최초 특별공급 (2/2)

※ e편한세상 지축 센터가든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.06.13으로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기준, 사업소득의 경우 전전년도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.  
 ※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6.13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  
 ※ 사업주체는 아래 구비서류 외에도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## ■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

서류구분	확인자격	증빙 제출서류	발급처
자격 입증서류	근로자	① 재직증명서	해당직장/세무서
	자영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	
	근로자,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	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(납부내역증명 포함) (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)	
소득세납부 입증서류	근로자,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,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	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(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) 및 납부내역증명(종합소득세 납부자) ② 납세증명서(국세완납증명)(종합소득세 납부자에 한함)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인날인)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인날인)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, 직인날인)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	①, ② 세무서 ③, ④ 해당직장 또는 세무서

## ■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	
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감중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(‘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’으로 발급)	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/세무서	
근로자	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감중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	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/세무서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※ 근무처별 소득명세서상 “주(현)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/세무서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① 재직증명서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	①, ② 해당 직장
일반과세자, 간이과세자, 면세사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	①, ② 세무서	
자영업자	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	① 사업자등록증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분)	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
	신규사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, 국민연금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	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	① 세무서 ② 등기소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	① 해당 직장/세무서 ② 해당 직장	
국민기초생활수급자	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※ 근로계약서, 월별급여명세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	① 해당 직장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각서(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① 분양사무실 비치	

※ 해당직장,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 
 ※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 또한 성명,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 
 ※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(예시:출산휴가, 육아휴직 등)을 명시하여야 하며,  
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
# 노부모부양 특별공급

※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6.13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
※ 사업주체는 아래 구비서류 외에도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해당서류	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 사항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-	· 접수 장소에 비치
	서약서	-	· 접수 장소에 비치
	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표	-	· 접수 장소에 비치
	신분증 사본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·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(계약용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
	인감도장	본인	· 인감증명서 상의 인장 대조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
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, 과거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·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※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(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) ※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(기록대조일 : 본인 생년월일 ~ 개명 이전일로 설정)
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피부양 직계존속	· 청약신청자(세대주)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	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·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필수 제출 -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	
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	·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 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-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(기록대조일 : 본인 생년월일 ~ 개명 이전일로 설정)	
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배우자	·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· 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	
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단독세대일 경우(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, 배우자가 사망, 이혼한 경우) 또는 만 30세 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·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 (부양가족 신청 시)	·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·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	·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여부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※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'전체 포함'으로 발급	
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	·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/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-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(기록대조일 : 본인 생년월일 ~ 개명 이전일로 설정)	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·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-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	
생업중사 단신부임	해외체류 증빙서류	본인	·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중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국내기업·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: 재직증명서 및 파견, 출장명령서 등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, 근로 관련 서류, 취업,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
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세대원	·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(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)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※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(기록대조일 : 본인 생년월일 ~ 개명 이전일로 설정) ※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 장기간 해외체류 이력이 확인될 경우, 체류 국가 확인을 위하여 여권 제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복무확인서	본인	·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기 기타지역(수도권)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(군 복무기간 명시) ·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	
대리인	위임장	-	· 접수장소 비치(당첨자 인감도장 날인)
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	·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[용도 : 위임용]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
	대리인 신분증	대리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대리인 인장	대리인	· 서명 가능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(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 포함)





# 일반공급

※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6.13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  
 ※ 사업주체는 아래 구비서류 외에도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해당서류	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 사항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-	· 접수 장소에 비치
	서약서	-	· 접수 장소에 비치
	가점표	-	· 접수 장소에 비치
	신분증 사본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·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(계약용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차 대리신청은 불가
	인감도장	본인	· 인감증명서 상의 인장 대조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
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, 과거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·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※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(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) ※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(기록대조일 : 본인 생년월일 ~ 개명 이전일로 설정)	
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배우자	·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· 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	
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단독세대일 경우(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, 배우자가 사망, 이혼한 경우) 또는 만 30세 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·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피부양 직계존속 (부양가족 산정 시)	·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신청자(세대주)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 ※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'전체 포함'으로 발급	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·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위한 필수 제출 -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	
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	·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-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(기록대조일 : 본인 생년월일 ~ 개명 이전일로 설정)	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·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-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	
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 (부양가족 산정 시)	·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·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	·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필수 제출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	
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	·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-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(기록대조일 : 본인 생년월일 ~ 개명 이전일로 설정)	
생업중사 단신부임	해외체류 증빙서류	본인	·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중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국내기업·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: 재직증명서 및 파견, 출장명령서 등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, 근로 관련 서류, 취업,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
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세대원	·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(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)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※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(기록대조일 : 본인 생년월일 ~ 개명 이전일로 설정) ※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 장기간 해외체류 이력이 확인될 경우, 체류 국가 확인을 위하여 여권 제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복무확인서	본인	·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기 기타지역(수도권)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(군 복무기간 명시) ·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	
대리인	위임장	-	· 접수장소 비치(당첨자 인감도장 날인)
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	·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[용도 : 위임용]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차 대리신청 불가
	대리인 신분증	대리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대리인 인장	대리인	· 서명 가능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(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 포함)